

**Deloitte.**

# 세무관세 뉴스

2024년 7월



# 주목할 만한 사항

## 세무관리

- 2024년 세금 납부 기한 연장
- 2024 2024년 국내 제조 및 조립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SCT) 납부 기한 연장

## 법인세 (CIT)

-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또는 산업 클러스터에 위치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CIT 인센티브
- 사업 허가 변경 시 CIT 인센티브
- 기업 합병 시 CIT 인센티브

## 간접세 (Indirect tax)

- 수출 세관 신고가 없는 3자 간 판매 거래에 대한 VAT

## 개인소득세 (PIT)

- 2024년 7월 1일 유효 된 신규 최저기본급여
- 지역별 최저임금
- 직원 휴가 비용에 대한 PIT
- 주식으로 지급된 배당금에 대한 PIT

## 외국인계약자세 (FWCT)

- 외국인 주재원에 대한 급여 상황에 대한 FCWT
- 계약 위반으로 외국인 파트너에게 지급된 배상금에 대한 FCWT

## 무역 및 관세

- EVFTA 및 UKVFTA에 따른 재제조 제품의 수입 관리
-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AKFTA 관세율표 발행
- 사용 목적 변경된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C/O) 인정 안내
- 제72/2024/ND-CP호 시행령의 이행 안내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Tax Firm  
of the Year



## 세무관리 (Tax Administration)

### 신규 규정

#### 2024년 세금 납부 기한 연장

2024년 6월 17일, 정부는 부가가치세 (VAT), 법인세 (CIT), 개인소득세 (PIT) 및 2024년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제64/2024/ND-CP호 시행령 ("제64호 시행령")을 발행했다. 이 시행령은 서명날로부터 발효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 적용 대상:

- 제 64호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부문에서 운영되는 기업 및 조직.
- 제 12/2023/ND-CP 호 시행령에 정의된 소규모 및 초소형 기업(SME)

#### 세금 납부 연장:

- 기업 및 조직:** 부가가치세(VAT) 및 법인세(CIT)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 사업자 및 개인:** 부가가치세(VAT) 및 개인소득세 (PIT)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 토지 임대료:** 2024년에 납부해야 하는 총 토지 임대료의 50%에 대해 연장이 가능하다.
- 부가가치세 (VAT):**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의 과세기간(월별 신고) 및 2024년 2분기 및 3분기(분기별 신고)에 대해 연장이 적용된다.
- 법인세 (CIT):** 2024년 2분기의 법인세 예납금 납부가 3개월 연장된다.

#### 연장 절차:

- 납세자는 연장을 신청할 때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
- 연장 신청서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세무당국은 연장 신청에 대해 승인 통지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 세무당국이 납세자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며 납세자는 연장 기간 동안 해당 세금, 토지 임대료, 그리고 연체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의 2024년 6월 17일 제 64/2024/ND-CP 호 시행령)

#### 2024년 2024년 국내 제조 및 조립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SCT) 납부 기한 연장

2024년 6월 17일, 정부는 2024년 국내 제조 및 조립 자동차에 대한 SCT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제65/2024/ND-CP호 시행령을 발행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 대상:** 국내 자동차 제조 및 조립 기업
- 연장 기간:**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의 SCT 납부 기한이 2024년 11월 20일까지 연장된다.

(정부의 2024년 6월 17일 제65/2024/ND-CP호 시행령)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법인세 (CIT) 지침 문서

###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또는 산업 클러스터에 위치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CIT 인센티브

2024년 6월 26일, 세무총국이 발표한 제 2721/TCT-CS 호 OL 에 서 는 CIT 인센티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 **신규 투자 프로젝트:** 현재 법인세 규정에 따르면,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또는 산업 클러스터에 위치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에 적용되는 CIT 인센티브와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 **확장 투자 프로젝트:**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또는 산업 클러스터에 위치한 확장 투자 프로젝트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에 적용되는 CIT 인센티브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24년 6월 26일 세무총국의 발행한 제2721/TCT-CS호 OL)

### 사업 허가 변경 시 CIT 인센티브

2024년 6월 27일, Binh Duong 세무국이 발행한 제 17370/CTBDU-TTHT 호 OL 에 따르면, 투자허가서 /사업자 등록증명서 변경 시 법인세 인센티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침이 적용된다:

- 허가 변경이 세금 인센티브의 자격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인센티브는 제96/2015/TT-BTC호 시행규칙 제 10 조 3 항 및 제218/2013/ND-CP호 시행령 제20조 3항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적용된다.
- 반면에, 허가 변경으로 인해 세금 인센티브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더 이상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4년 6월 27일 제17370/CTBDU-TTHT호 OL)

### 기업 합병 시 CIT 인센티브

2024년 6월 28일 Binh Duong 세무국이 발행한 제17718/CTBDU-TTHT호 OL에 따르면, 기업 합병 시 다음과 같은 CIT 인센티브 지침이 적용된다:

-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규정된 CIT 인센티브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합병된 회사의 남은 CIT 인센티브 기간을 승계할 수 있다.
- **CIT 인센티브 자격을 갖춘 투자 프로젝트를 가진 회사는** CIT 인센티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회계, 청구서 발행, 서류 작성 규정을 준수하고, 2014년 6월 18일 재무부가 발행한 제 78/2014/TT-BTC 호 시행규칙 제18조에 명시된 신고 방법에 따라 CIT를 납부해야 한다.

(2024년 6월 28일 Binh Duong 세무국이 발행한 제 17718/CTBDU-TTHT호 OL)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간접세 (Indirect tax) 지침 문서

### 수출 세관 신고가 없는 3자 간 판매 거래에 대한 VAT

회사가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후 베트남에 위치한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상품에 대해 0% 세율이 적용된다:

- 상품이 베트남 외부로 인도될 것; 및
- 회사는 상품이 베트남 영토 밖으로 인도되었음을 증명하는 충분한 서류를 보유할 것

*(Binh Duong 세무국의 2024년 6월 3일 제15073/CTBDU-TTHT호 OL)*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개인소득세 (PIT)

### 신규 규정

#### 2024년 7월 1일 유효된 신규 최저기본급여

2024년 6월 30일, 정부가 공무원, 직원 및 군인에 대한 최저임금을 규정 제73/2024/ND-CP호 시행령을 발행했다.

- 이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최저기본급여가 월 1,800,000 VND에서 월 2,340,000 VND로 인상된다.
- 최저기본급여 인상에 따라 의무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의 월 한도액이 20배의 월 기본급여 (즉, 월 36,000,000 VND에서 월 46,800,000 VND로)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의 2024년 6월 30일 제 73/2024/ND-CP 호 시행령)

#### 지역별 최저임금

2024년 7월 1일부터 지역별 월간 최저임금 및 지역별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인상된다:

지역	월간 최저임금 (VND/월)	시간당 최저임금 (VND/시간)	실업보험 기여금에 대한 급여 (VND/월)
I	4,960,000	23,800	99,200,000
II	4,410,000	21,200	88,200,000
III	3,860,000	18,600	77,200,000
IV	3,450,000	16,600	69,000,000

지역별 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의무 실업 보험 기여금의 월 한도액이 지역별 최저임금의 20배로 상향 조정된다 (즉, 월 93,600,000 VND에서 월 99,200,000 VND로 인상됨).

(정부의 2024년 6월 30일 제74/2024/ND-CP호 시행령)

#### 직원 휴가 비용에 대한 PIT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휴가 비용은 수혜자의 이름이 명시된 경우 PIT 대상으로 적용된다. 수혜자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고 직원 전체에 대해 집단적으로 지급된 휴가 비용은 PIT 면제된다.

(세무총국의 2024년 5월 10일 제1982/TCT-DNNCN호 OL)

#### 주식으로 지급된 배당금에 대한 PIT

주식 형태로 배당금을 받는 개인 주주들은 배당금 수령 시 자본 투자에 대한 PIT 신고 및 납부가 면제된다.

자본(주식 배당금) 양도 시, 개인은 제111/2013/TT-BTC호 시행규칙 제10조 1항 및 2항, 제11조 2항 d호 및 제92/2015/TT-BTC호 시행규칙 제16조 b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자본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과 증권 이전 소득에 대해 PIT를 납부해야 한다.

(Ben Tre 세무국의 2024년 7월 5일 제2044/CTBTR-TTHT호 OL)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외국인계약자세 (FWCT) 지침 문서

### 외국인 주재원에 대한 급여 상환에 대한 FCWT

베트남 회사가 외국인 주재원의 급여를 대신 지급한 모회사에 급여를 상환하는 경우 (베트남 회사와 모회사 간의 계약에 따라), 베트남 회사는 모회사가 주재원에게 지급한 금액과 동일하게 달러로 상환한 경우에 FCWT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없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4년 7월 4일 제/18135/CTBTR-TTHT호 OL)

### 계약 위반으로 외국인 파트너에게 지급된 배상금에 대한 FCWT

베트남 파트너로부터 계약 위반으로 인해 외국인 계약자가 받은 배상 소득은 FCWT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며, 2%의 법인세(CIT) 세율로 FCWT (CIT 부분)가 적용된다.

(Hai Duong 세무국의 2024년 7월 9일 제/6067/CTH DU-TTHT호 OL)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무역 및 관세 신규 규정

### EVFTA 및 UKVFTA에 따른 재제조 제품의 수입 관리

2024년 6월 17일, 정부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유럽 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EVFTA")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UKVFTA")에 따라 수입되는 재제조 제품의 관리를 규정한 제66/2024/ND-CP호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 시행령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관리 책임을 맡은 각 부처에서 발행한 **7개의** 재제조 제품 수입 가능 품목 목록 (부록 I 및 부록 VII 참조).
- 재제조 제품 수입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
- 재제조 코드 부여를 위한 절차 및 요구 사항에 대한 개요
- EVFTA 및 UKVFTA에 따른 재제조 제품의 적합성 인증서 발급 권한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
- 재제조 제품 수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세부 사항.
- 재제조 제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자의 책임에 대한 정의

(정부의 2024년 6월 17일 제66/2024/ND-CP호 시행령)

###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AKFTA 관세율표 발행

2024년 7월 4일, 정부는 2022년 12월 30일 자 제119/2022/ND-CP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제81/2024/ND-CP호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 시행령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세안-한국 상품 무역협정 ("AKFTA")에 따른 베트남의 특혜 관세율표에 대해 규정한다.

이 시행령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23-2027년 동안 적용되는 새로운 AKFTA 관세율표는 (2023년 11월 2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제 119/2022/ND-CP 호 시행령에서 규정된 이전 을 대체한다;
- HS 코드 04.07, 17.01, 24.01, 25.01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이 포함되어 있다.
-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4일 서명일자로부터 발효된다.
- 2023년 11월 28일부터 이 시행령 발효일 전날까지 수입 및 관세 신고된 상품에 대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관세 당국이 과다 납부된 관세를 환급해준다:
  - ✓ 수입된 상품이 제119/2022/ND-CP호 시행령에 따라 AKFTA 특혜 관세율 적용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 ✓ 수입 관세가 제119/2022/ND-CP호 시행령의 관세율표에 명시된 세율로 납부되었을 경우.
  - ✓ 납부된 관세가 제81/2024/ND-CP호 시행령의 새로운 관세율표에서 적용되는 해당 세율보다 높을 경우.

(정부의 2024년 7월 4일 제81/2024/ND-CP호 시행령)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무역 및 관세 신규 규정

### 사용 목적 변경된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C/O) 인정 안내

관세총국은 다음의 경우에 CO (Form D)를 인정하지 않으며 특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사용 목적 변경을 위한 신고할 때, 상품이 제 38/2018/TT-BTC 호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입 당시의 상태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 원래의 수입 신고가 E31 통관 모드로, 사용 목적 변경의 신고가 A42 통관 모드로 2023년 7월 15일 이전에 등록된 경우, 2023년 5월 31일 제33/2023/TT-BTC호 시행규칙이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총국의 2024년 6월 28일 제3116/TCHQ-GSQL호 OL)

### 제72/2024/ND-CP호 시행령의 이행 안내

2024년 7월 1일, 관세총국은 부가가치세 (VAT) 인하에 관한 제72/2024/ND-CP호 시행령의 이행 지침을 제공하는 제3160/TCHQ-TXNK호 OL를 발행하였다. 이 지침에서 VNACCS/VCIS 플랫폼을 통한 세율 신고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4년 7월 1일 0시 이후 VNACCS/VCIS에서 등록된 전자 수입 신고서로서 VAT 8%가 적용되는 경우, "세율 및 기타 징수 코드"란에 코드 VB225를 선택하여 VAT 8%를 신고해야 한다.
- 코드 VB225는 VAT가 면제된 상품, VAT 0%, 5%, 10% 적용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총국의 2024년 7월 1일 발행 제3160/TCHQ-TXNK호 OL)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Contact Us



**Bui Tuan Minh**  
**National Tax Lead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Thomas McClelland**  
**Tax Partn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 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Tran Quoc Thang**  
**Tax Partner**  
+84 28 710 14323  
qthang@deloitte.com



**Lee Sang Keun**  
**Korean Services Group Leader**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

### Hanoi Office

15<sup>th</sup>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 Ho Chi Minh City Office

18<sup>th</sup>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